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 1 장 총 칙 1.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외부기관)에 제공 시 기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 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제 1 장 총 칙 1.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외부기관)에게 제공할 때의 기준, 범위, 절차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 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 개정사유: 법 제정 시점 중심 표현을 상시 적용 문구로 정비하고, 지침의 적용대상에 목적 외 이용을 명시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34309호)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30조(대통령령 제36340호, 2026. 5. 19. 시행)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 10. 31. 시행 / 일부 조항 2026. 10. 30. 시행) ※ 개정사유: 제공받는 자의 제한·처리위탁·안전성 확보조치 근거를 추가하고 법령·고시 번호와 시행일을 현행화함.
3. 용어 정의 가. ~ 라. (생략) (신설) (신설)	3. 용어 정의 가. ~ 라. (생략) 마. “유출 등”이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말함. 바.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등을 말함. ※ 개정사유: 유출 대응의 적용대상과 업무 담당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에 필요한 용어를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 2 장 제공 기준 1. 기본 원칙 (신설) 가. ~ 다. (생략)	제 2 장 제공 기준 1. 기본 원칙 2026. 9. 11.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현행 100분의 3)으로 상향될 예정이므로,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여부 판단은 아래 4대 기준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 ~ 다. (현행과 동일) ※ 개정사유: 법 위반 제재 강화에 대응하여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정성·피해의 최소화·법익의 균형성 심사를 강조함.
2. 개인정보 제공 기준 가. (생략) 나.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법 제18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2) 이하 (생략)	2. 개인정보 제공 기준 가. (현행과 동일) 나.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법 제18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하 (현행과 동일) ※ 개정사유: 법령식 문장으로 표현을 정비함(의미 변경 없음).
제 3 장 업무처리 기준 1.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시 업무절차 1. ~ 9. (생략) (신설)	제 3 장 업무처리 기준 1.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시 업무절차 1. ~ 9. (현행과 동일) 10. 유출 등 발생 시 대응 담당: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목적 외 제공한 자료의 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5. 안전성 확보 조치 참조) ※ “유출 등 발생 시 대응”은 2026. 9. 11.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유출 가능성 통지 제도를 반영하여 신설 ※ 개정사유: 실제 유출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단계에서도 즉시 내부 보고하도록 업무절차를 보완함.

현행	개정안
3. 자료제공 업무처리 기준 가. (생략) 나. 자료제공 처리기 (생략) 다. 자료제공 방법 1) ~ 2) (생략) 3) 보조기억매체(USB, CD, 디스켓 등)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① ~ ③ (생략) ④ 보조기억 매체(USB, CD, 디스켓 등) 반·출입 절차에 대해서는 매체제어시스템 등록 후 처리 4) (생략)	3. 자료제공 업무처리 기준 가. (현행과 동일) 나. 자료제공 처리기준 (현행과 동일) 다. 자료제공 방법 1) ~ 2) (현행과 동일) 3) 보조기억매체(USB, CD 등)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보조기억 매체(USB, CD 등) 반·출입 절차에 대해서는 매체제어시스템 등록 후 처리 4) (현행과 동일) ※ 개정사유: 누락된 제목 문구를 보완하고 노후 저장매체인 디스켓 예시를 삭제함
5. 안전성 확보 조치 가. (생략) 1) (생략) < 제공기관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사항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생략) (신설) (신설)	5. 안전성 확보 조치 가.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 제공기관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사항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 10. 31. 시행 / 일부 2026. 10. 30. 시행) 기준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현행과 동일) 나. 유출 등 발생(가능성 포함) 시 대응 절차 2026. 9. 11.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실제 유출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도 통지·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유출 등”의 범위에 위조·변조·훼손을 포함한다. 1)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유출·위조·변조·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담당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주체 통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절차를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행 3) 제공 대상[별첨 제1호] 비교란에 유출 등 발생·대응 이력을 기록·관리한다. 다. 2026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반영사항 1) 접근 권한자 범위 확대 (2026. 10. 30. 시행)

현행	개정안
	- 종전 “개인정보취급자”에 한정되었던 접근통제 대상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진 자(정보주체 제외)”로 확대된다. 목적 외 제공업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인력은 범위 확대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관리한다. 2) 2차 인증(다단계 인증) 적용 의무화 (2026. 10. 30. 시행)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2차 인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한다. ※ 개정사유: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번호와 시행일을 현행화하고, 유출 가능성 인지 시 보고·통지·신고·기록 절차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비인가 접근 및 계정 탈취 위험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러 신설함.
[별첨 제1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목적 외 이용기관 / 제공받는 기관 및 담당자 날짜·주기·기간 / 형태 / 법적 근거 / 목적 / 개인정보 항목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내용 (신설)	[별첨 제1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목적 외 이용기관 / 제공받는 기관 및 담당자 날짜·주기·기간 / 형태 / 법적 근거 / 목적 / 개인정보 항목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내용 비고(유출 등 발생·대응 이력) ※ 개정사유: 유출 등 발생 및 후속 대응 내역을 제공 이력과 함께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비교란을 추가함.